

# 신라시대 왕실에 있어서 외손의 왕위계승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

성태규\*

## 목 차

- I. 문제제기
- II. 한국사회의 집의 개념
- III. 신라시대 왕위계승에 나타나는 외가의 문제
- IV. 결론

## < 요약 >

지금까지 한국 가족사를 논의하면서 외가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마도 한국가족의 근간이 부계사회에 있다는 지나친 고정관념으로 인해 외가의 중요성이 애써 무시되어져 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한국사회는 부계사회임을 주장하며, 한국사회가 면면히 부계사회를 유지하게 된 것은 이 외가의 존재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말하자면 사회 정치 경제적인 변화 속에서 부계사회구조가 현실적으로 적응해 나가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하나의 기제로 외가의 존재를 이해하고 있으며 이것이 이 논문의 중요한 단초이기도 하다.

신라사회가 여성도 자신이 태어난 본가의 성원권을 가지는 “강력한” 부계출계사회라고 본다면 탈해를 위시한 사위가 왕위를 계승하는 사례는 당연한 것이다. 다만 사위의 왕위계승은 부인을 대신하는 것으로 남권위주사회에서 그 역할을 남편이 대신하는 것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인 대신 왕위를 계승한 사위는 자기 자식에게 바로 왕위를 계승할 수 없다. 다만 친손이 없을 때 비로소 외손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며 그런 논리에 의해서 왕위는 박씨에서 석씨로 그리고 다시 김씨로 계승된 것이다. 즉 “분할될 수 없는 상속형태(제사나 왕위상속)는 친손이 없을 때 외손에게로 상속권이 넘어 간다”는 단순한 상속논리에 따라 왕위는 박씨에서 석씨로 다시 석씨에서 김씨에게로 넘어간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논리에 따라 그 왕위계승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설사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왕력이 조작되었다 손치더라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편찬한 고려시대의 출계원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출계원리에서 차지하는 외가와 외손에 대한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주제어] 외가, 외손, 출계, 왕위계승

\* 영남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원

(접수일 : 2004. 4. 25, 심사일 : 2004. 5. 10, 심사완료일 : 2004. 5. 25)

## I. 문제제기

신라 30대 왕 법민(문무왕)이 용삭 원년 신유(661) 3월 일에 이르러 조칙을 내려 말하였다. “가야국 시조왕의 구대손 구형왕이 이 나라에 항복할 때 데리고 온 아들 세종의 아들인 술우공의 아들 서운 잠간의 딸 문명왕후가 바로 나를 낳은 이다. 이따므로 시조왕은 나에게 바로 15대조의 시조가 된다. (시조왕이)다스리던 나라는 이미 멸망했으나 장사를 지낸 사당이 아직 남아 있으니 종묘에 합하여 제사를 계속할 것이다”<sup>1)</sup> 기술한 대로 문무왕은 가야국의 외손이다. 문무왕은 자신의 외가인 가야국의 시조를 자신의 조상이라 하고 제사를 지낼 것을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 가족 및 친족을 논의하면서 외가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마도 한국가족의 근간이 부계사회에 있다는 지나친 고정관념으로 인해 외가의 중요성이 애써 무시되어져 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러한 점은 조선중기이후로 부계사회가 정착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미분화체계의 사회였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위해서 외가의 존재에 대하여 언급은 하고 있지만 외가가 무엇이며 외손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규명은 시도하지 않고 있다. 필자가 외가와 외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신라왕위계승 해석에 있어 바로 이 문제가 중요한 키워드가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신라 상대 왕위계승문제를 두고 사료의 진위에 학자들 간에 많은 이견이 있어 왔다. 대체로 3가지 견해로 요약되는데 첫째는 신라상대 왕위계승사료의 많은 부분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견해이다. 일본인 학자 末松保和가 그 대표적 학자로 16대 걸해왕 까지를 후대에 조작한 왕명으로 보고 있다. 17대 내물왕 이전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선입관에서 출발하는 견해이다. 두 번째 견해는 신라상대 왕위계승 사료 중 일부만 인정하는 견해이다. 김철준이 그 대표적인 학자로 첫 번째 견해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된 또 다른 견해이다. 김교수는 7대 동일친족집단의 이론을 근거로, 원래 박·석·김 3세력집단의 병렬적 왕위계승이 있었는데 이것을 단선적으로 조작하면서 7대정도의 왕이 있었던 것을 13대로 늘여 놓은 것이라 보았다. 이 두 견해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물왕 이전의 기록을 믿지 않는 견해들이다. 세 번째 견해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나오는 왕위계승 자료를 대체로 믿고 있는 견해들이다. 김원용, 천관우, 신형식, 이광규, 이종욱 교수가 그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왕위계승에 관한 사료적 가치에 대한 논의부분은 여기서 논외로 하며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세 번째 견해에 동조하고 있음을 먼저 밝힌다.

1) 『삼국유사』 기이 제 2 가락국기 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사료 진위여부의 논쟁 위에서 또 다시 전개된 것이 신라시대의 출계에 관한 논쟁이었는데 그것은 신라왕위계승을 통한 출계추적이었다. 가장 연륜이 깊고 다수의 학자들이 주장해 온바는 신라시대를 모계에서 부계로 전환되는 시기로 보는 부류이다. 今西龍, 末松保和, 백남운, 김두현, 심우준, 이기백, 정중환, 신형식 등이 이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이다<sup>2)</sup>. 이외에 신라사회를 부계사회로 보지 않는 사람으로는 신라사회를 double descent로 파악하는 신동하, 피영희와 bilateral descent로 파악하는 이광규가 있다. 이광규 교수는 사위의 왕위계승을 설명하기 위하여 동속(Ramage)이론을 원용하고 있다. 동속집단에서는 성원권을 결정하는데 모 또는 부의 계통 중 한 쪽을 택하게 되며 출생지보다는 거주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광규 교수는 동속이론을 신라 고대왕위계승에 접목하여 왕위계승이 박씨에서 석씨로 그것이 다시 김씨에게로 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신라시대를 모계에서 부계로 전환되는 시기로 보는 부류와 함께 큰 줄기를 이루는 부류가 신라시대를 부자상속 내지 장자상속으로 보는 사람들이다. 이덕성, 변태섭, 이기동, 김의규, 이종욱 등이 이들인데 신라시대를 부계사회로 보는 사람들이다. 이 중 이종욱은 신라 상대의 왕위계승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신라 왕실을 clan과 lineage의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종욱 교수도 왕위계승권이 박씨에서 석씨로 그것이 다시 김씨에게로 넘어가는 중요한 요인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이 세 씨족 간의 정치적 세력관계의 변화를 그 주 요인으로 들고 있다. 즉 새로운 씨족의 왕위계승문제에 있어서는 씨족간의 정치적 세력관계의 변화로 보는 것이 더욱 합당하여, 박씨 왕 시대 말기에 석씨 족이 성장하여 석씨왕조를 열었고 석씨 말기에는 김씨족이 성장하여 김씨왕시대가 시작된 것<sup>3)</sup>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여기서 필자는 최재석 교수의 이종욱 교수에 대한 비판에 주목한다. 최교수는 이교수가 박·석·김을 각각 하나의 씨족으로 간주하여 신라상대의 왕위계승은 박·석·김 세 씨족간의 계승, 동일씨족 안의 lineage(가계)의 계승, 부자간의 계승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王壻나 異姓王이 왕위계승을 하는 것은 왕위계승이 단순히 혈족계승의 원리로는 설명할 수 없고 정치적 세력사이의 연합만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이것은 그가 도입한 clan이나 lineage의 개념으로는 왕위계승의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 밖에는 안 된다<sup>4)</sup>는 비판이 바로 그것이다. 최재석 교수는 신라시대에는 부계의 혈연집단이 존재할 수 없었음을 지적하고 신라시대는 카테고리로서의 부계친은 존재하였지만 조직이나 집단으로서의 부계친은 존재하지 않은, 그래서 현재까지 알려진 신라의 친족성격은 그 어느 사회의 것보다도 동일하

2) 최재석, 1996. 『한국가족제도사 연구』(일지사) 109-118

3) 이종욱, 1980. 『신라상대왕위계승연구』(영남대 출판부) 162

4) 최재석, 1996. 『앞책』 117

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sup>5)</sup>.

그러나 부계출계사회에서도 동일시조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광범한 친족집단을 형성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다. R. fox는 부계사회의 유형을 통합분지형(merging segmentary series)과 계열형(linear series)로 나누면서 통합분지형은 분파된 소종족간의 관계나 서열을 정확히 추종하고 인식하여 질서가 정연한 것이며, 계열형은 분지된 소종족들이 공동의 시조에서 유래되었다고만 인식하고 정확한 계보를 추적할 수 없는 것이라 분류했다<sup>6)</sup>. 또한 M. fortes는 출계를 추종하지는 않지만 양친의 일방의 친척과의 관계를 보완속(complimentary filiation)이란 개념으로 정리하였다. 한국사회의 외가는 바로 그러한 보완속이라고 볼 수 있는 기제이다. 외가라는 보완속이 한국부계사회에 깊이 관여하면서 한국부계친족구조를 계열형으로 이끌어 낸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이 한국사회의 출계에 대하여 혼란을 겪게 된 것에는 가계계승과 상속에 대한 분명한 구별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출계는 부계를 따른다하더라도 상속은 그와 별개로 배분되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된 것이다. 상속에 있어 외가 및 외손의 존재가 개입됨으로서 혼선이 빚어진 것인데 상속이 외손에게로 배분되었다는 것이 부계사회가 아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특히 왕위계승을 가계계승의 원리로 추적한 것은 이러한 오류를 더욱 확장시켜 나간 이유이다. 왕위는 가계계승이 아니라 상속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그렇게 본다면 최교수의 주장대로 한국사회가 특이한 친족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계친족사회의 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한국사회가 면면히 부계사회를 유지하게 된 것은 이 외가의 존재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말하자면 사회 정치 경제적인 변화 속에서 부계사회구조가 현실적으로 적응해 나가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부계사회의 보완속으로 외가의 존재를 이해하고 있으며 이것이 이 논문의 단초이기도 하다. 신라왕실의 왕계계승의 원리 문제는 그동안 많은 연구업적이 쌓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쉽사리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신라상대왕위계승이 박씨 집단에서 석씨집단으로 그리고 다시 김씨집단으로 넘어가는데 있어 신라왕실이 가지고 있었던 왕위계승에 대한 상속원칙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며, 이것은 한국사회의 부계적 출계원리에서 보완속으로 작용하는 외가에 대한 진정한 본질이 파악될 때 한국부계친족성격이 규명되며 또한 신라상대왕위계승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게 된다는 생각이다.

5) 최재석, 1996. 『앞책』 204-206

6) 이광규, 1984. 『사회구조론』 87

## II. 한국사회의 집의 개념

신라상대의 외손의 왕위계승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국친족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며 한국친족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집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다시 전제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집의 가계계승의 원리와 상속의 원리를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계사회에 있어 가계계승이나 상속은 부에서 자로 함께 계승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부계사회에서도 가계계승에 따라 상속이 독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출계와 상속은 동일개념이 아니다 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가계계승에 있어 부계나 모계처럼 단계 출계(unilineal descent)는 생물학적으로 볼 때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이나 딸의 출산이 간단없이 무한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계승에 있어 적어도 생물학적으로는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 조선중기이후로는 입양자 제도를 택함으로써 이러한 생물학적인 한계를 제도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이 있어왔다. 그러하다면 입양자 제도가 채택되지 않았던 그 이전의 한국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었을까?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신라시대보다 비교적 많은 자료를 남기고 있는 고려시대와 조선 중기 이전의 한국친족구조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왔던 기존의 학자들은 조선중기 이전에 절손된 가문이 입양자를 하지 않고 외손봉사를 하였다라는 점과 제 자녀 균분상속원리(諸子女均分相續原理)에 따라, 딸을 통하여 재산이 외손에게 상속된 관행을 두고 그것이 모계 또는 미분화 출계원리를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사회의 부계출계원리는 조선조 중기 이후에 와서 비로소 성립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과연 한국사회에서 부계출계원리는 조선후기에 와서야 정착된 것일까? 제 자녀 균분상속이라는 재산상속관행과 외손봉사와 같은 일견 비 부계적인 것으로 보이는 관행이 한국사회가 부계사회가 아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 딸이 상속을 받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외손들에게 상속된다고 하여 그것이 부계출계원리와 배치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속단이다. 우선 딸이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지극히 부계적이다. 딸 역시 부계가족성원의 한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아내가 사망했을 때 아내가 친정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남편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고 처가와 상의하는 것은 그 재산의 소유권이 아내에게 또는 처가에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원칙을 따른다면 딸에게 귀속된 재산은 본인이 사망했을 때 본가로 다시 환수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그렇게 되지 않고 외손에게 상속되는 것은 외손이란 딸과 가장 가까운 혈육관계에 있으며 또한 자신의 집 밖에 있는 또 하나의 혈육을 나누어준 자손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재산상속과 함께 상속되는 것이 제사의 의무이다. 그러나 외손이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 재산을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제사상속을 같이 받는 것은 예외의 경우이다. 친손이 없을 때 비로소 외손에게 제사의 의무가 주어졌는데 그것이 외손봉사이다. 다시 말하면 외손

봉사가 외가의 가계계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가계계승과 재산상속 및 외손의 제사상속은 별개의 문제라는 말이다. 외손봉사는 결과적으로 어머니를 통하여 외가재산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보완적 의무의 이행이지 절대적 의무나 권리는 아니다. 외손은 부계 출계를 원칙으로 하는 한국친족구조의 보완적 기제로 작동한다. 이점이 한국사회를 원칙적으로 부계사회로 보는 이유이다.

한국사회의 집의 개념을 파악하려면 외가가 무엇인지를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외손이라 함은 바깥에 있는 나의 자손이라는 뜻이다. 즉 자신이 속한 부계집단 바깥에 있는 또 하나의 자손을 뜻함이다. 이는 내집단(內集團)의 자손과는 구별이 되는 또 하나의 혈연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외손이라 함은 좁게는 나의 딸의 자녀를 의미하며 그보다 조금 넓게는 외손자녀의 자녀까지를 뜻하며 그보다 더 넓게는 나의 딸의 자녀의 자손 모두를 포함한다. 따라서 외손의 개념은 매우 확산적이며 궁극에 가서는 친손을 제외한 나의 모든 혈손들을 의미하게 되는 거의 비제한적인 범위를 가지는 개념이다.

한편 외가란, 말 그대로 바깥에 있는 또 하나의 나의 집이며 외손이 비 제한적 의미를 가지는데 비하여 외가는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외가와외의 혈연관계는 어머니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 외가는 어머니의 집이다. 어머니의 부모(외조부모)와 어머니와 혈육이 같은 형제자매가 외가의 중심이 되는 성원이다. 그리고 외조부의 직계조상이 나의 외가 쪽 조상이 되며 나는 그들의 외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선중기 이전에 관행화되었던, 외가로부터의 상속을 받는 원리를 생각해 보자. 외가는 어머니의 집이며 그래서 어머니는 집의 구성원의 자격으로 재산, 제사의 상속권, 가계계승권을 함께 가졌다. 그런데 어머니의 가계계승권은 당대에 한한다. 외손은 자신의 친가의 가계계승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어머니로부터는 재산상속권과 제사상속권만 물려받게 되며 그것도 제사상속권은 잠재적인 권한이다. 제사의 상속을 잠재적이라 표현한 것은 친손이 모두 소멸했을 경우에 한해서 외손에게 제사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그것은 제사상속권 역시 가계계승권과 마찬가지로 부계가 우선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계계승과 재산상속이 분리되는 것을 알아야 하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분할될 수 없는 상속대상은 부계 쪽에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찌되었던 나는 외가로부터 재산상속권과 잠재적인 제사상속권을 가짐으로서 외가 역시 나의 집이 되는 것이다. 다만 나의 가계 계승권은 부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부계가 나의 본집이며 또 하나의 상속의 권한이 주어지는 외가는 바깥의 나의 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외손은 제사상속의 최후 보루가 되며 입양자제도가 채택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절손이 되었을 때 한해서 외손이 제사를 모시고 있었던 것이 된다. 그러나 외가로부터의 재산상속과 잠재적인 제사상속은 친가의 가계 계승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친가의 가계 계승권을

존수하면서 외가로부터 재산상속과 잠재적 제사상속권을 갖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하여 살펴볼 개념은 외외가와 진외가이다. 외외가는 어머니의 외가이며 진외가는 아버지의 외가를 뜻한다. 결과적으로 나는 외외가와 진외가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데 외외가의 재산은 어머니로부터 내가 물려받는 것이며 내 자식에게는 나를 통하여 나의 부계 쪽 재산으로 편입된 후 상속하게 됨으로 내 자식 대에서는 부계 쪽 재산 상속으로 분류 된다. 진외가 쪽 재산 역시 내가 직접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계승되는 것이기에 진외가의 재산상속은 아버지로부터 이어지는 부계 쪽 재산상속의 한 요소로 계승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외외가의 재산은 나를 통해 나의 부계로 편입되며 진외가로부터 재산상속은 아버지를 통해 이미 나의 부계 쪽으로 편입된 재산의 상속이다. 이것은 외손이 남자일 경우인데 외손녀의 경우는 재산상속이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외손녀 당대에서 마무리가 된다. 즉 외손녀가 재산을 상속받는다 고 하더라도 그의 자녀세대로 넘어가면 당연히 그들의 부계 쪽 상속 요소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즉 외가 쪽에서 상속되는 재산은 항상 부계 쪽으로 편입되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점이 모계나 선계출계율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며 한국사회를 원칙적으로 부계사회로 인식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이 점은 신라상대 왕위계승문제에 중요한 해결의 실마리가 된다. 왕위계승을 출계의 개념으로 파악하게 되면 많은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왕위 계승은 출계와는 별개의 상속의 개념을 통하여 추적할 때 비로소 신라왕위계승의 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의 집이란 무엇인가? 집이란 용어는 사실 그 범위에 있어서 매우 신축성을 가지는 개념이다. 이광규 교수는 집이란 단어란 한국인의 일상용어이면서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저 집은 상당히 높은 집이다>라고 할 때의 집은 건물을 지칭하고 <저 집은 훌륭한 집이다>라고 말할 때는 가풍을 말한다. <저 집은 양반 집이다>할 때는 가격을 표시하는 말이고, <저 집은 양주뿐이다>할 때는 식구를 말한다. 큰집, 작은집 하는 것은 본가와 분가를 말하기도 한다. 그 외에 <우리 집안>, <우리 집 식구>, <집안사람> 등 <집>이란 용어가 사용되는 범위는 실로 광대하다고 집의 개념의 복잡성을 설명하고 있다<sup>7)</sup>.

집의 개념이 이렇게 복잡성을 띄고 있으며 여러 확장된 의미로 사용된다 할지라도 역시 최소단위는 부모와 형제자매로 구성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사촌까지만 확대되더라도 큰집과 작은집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러면 최소단위로서 집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사촌에서 큰집과 작은집으로 집의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최소단위의 집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그들은 자신을 낳아준 부모와, 부모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들이다. 그러나 사촌은 친가는 같으나 외가가 서로 다르다. 이것이 집이 분열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엄격하게 말

7) 이광규, 1977. 『한국가족의 구조분석』(일조각) 29

하자면 사촌으로 그 갈래가 갈라지면서 상속의 출처와 그 내용이 서로 전혀 달라지는 것이다. 다만 집이 달라진다하더라도 집이 갈라지는 분기세대의 부가 상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각각의 집이 그 상속권을 가지게 된다. 배분될 수 있는 재산은 집의 성원들에게 분산상속이 되며 배분될 수 없는 상속형태(예를 들면 제사나 왕위상속)는 윤회의 방식을 따라 상속되며 여기에는 부계우선 논리가 적용이 된다. 이것은 한국사회가 출계에 있어서는 분명히 부계를 준수한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왕위계승의 문제는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요약하자면 조선중기 이전의 한국사회는 집의 사회이다. 그 집이란 부모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집단이며 출계는 부계를 철저히 따른다. 그러나 부계사회이면서 부계친족집단형성을 하지 못했던 것은 외가로부터의 재산상속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거주지가 선택되었기 때문이다. 역으로 말하면 이러한 외가로부터의 상속과 이에 따른 거주지의 선택은 한국사회가 집의 사회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속 관행 때문에 친족집단형성이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한국사회를 비부계적으로 보아온 것이나, 분명한 것은 집의 가계는 부계출계에 의해서 계승되었으며 재산상속 역시 외가 쪽에서 상속되는 재산은 항상 부계 쪽으로 편입되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렇게 본다면 조선후기는 한국사회에서 준수되어 내려 왔던 기존의 부계 가계계승원리에 상속과 제사의 계승의 선을 부계 쪽으로 독점적으로 일치시킴으로서 부계친족제도를 강화시켜나가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 Ⅲ. 신라 상대 왕위계승에 나타나는 외가의 문제

신라의 왕위계승은 박혁거세가 그의 친자인 남해에게 왕위계승을 하면서 시작이 된다. 박혁거세가 자신의 아들인 남해에게 왕위계승을 하는 것은 신라가 부계출계를 원칙으로 하는 사회였다고 이해한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할 수 있다. 문제는 그 다음 왕위계승에서 시작이 된다. 어머니가 알영 부인이며 아내는 운제부인(혹은 아루 부인)인 남해차차웅은 슬하에 아들 유리와 딸 아효를 두었다(혹은 유리에게는 아우 내로가 있었으며 파사는 내로의 아들이라고도 한다).

유리가 남해의 왕위를 계승하는 것은 아버지인 남해가 할아버지인 박혁거세의 왕위를 계승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계출계원리에서 볼 때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유리가 자신의 왕위를 친자인 일성과 파사(혹은 유리의 동생인 내로의 아들이라고도 한다)를 두고 여동생의 남편인 석탈해에게 계승했다는 점이다(이것도 따지고 보면 유리로부터 계승되었다기보다는 장인인 남해로부터 계승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점이 먼저 연구자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주었는데 신라사회가 부계출계원리를 따른다면 당



연히 여동생의 남편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에게 바로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은 신라사회가 부계사회가 아니었다는 증거가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만든 것이다. 물론 남해가 후계자를 지명하는데 있어 “내가 죽은 뒤에는 아들과 사위를 구별하지 말고 나이 많고 어진 사람으로 왕위를 잇게 하라”는 유언을 남겼고 이는 사위 아들을 구별하지 않고 왕위를 계승하라는 뜻으로 해석되어 질 수도 있다. 이것이 신라사회를 부계사회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곤혹해 하는 점이다. 남해에게 유리라는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위인 탈해가 왕위계승의 후보자로 떠올랐다는 점 그 자체부터가 부계출계 논리와 배치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왕위계승은 사위인 탈해가 아니라 아들인 유리에게 먼저 계승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왕위계승과정에 일어난 일들을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유리와 탈해는 왕위계승과정에서 서로 양보하다가 떡을 물어 이빨 자국이 많은 사람이 왕위계승하기로 하고 결과적으로 유리가 왕위를 먼저 계승하게 되었다. 이러한 왕위계승과정에서 나타나는 유리와 탈해의 서로간의 양보는 정치적 구도 속에서 이루어 졌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탈해는 남해 왕 5년에 그의 사위가 되었으며 7년에는 대보라는 벼슬을 받아 정사를 다스렸다. 탈해가 남해의 사위가 되었고 또한 대보라는 높은 벼슬을 받은 것은 이미 그가 독자적으로 상당한 정치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남해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들인 유리가 마땅히 왕위계승의 첫 번째 대상으로 생각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해가 아들인 유리와 사위인 탈해 모두에게 왕위계승의 개연성을 둔 것은 탈해의 정치적 힘이 이미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왕위계승자인 유리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탈해는 이점을 양보로써 해결을 하였는데 탈해의 양보 뒤에는 여러 가지 계산이 깔렸을 수가 있다.

탈해가 유리에게 왕위를 먼저 양보한 것은 첫째 왕위계승의 우선권은 어차피 남해의 맏아들인 유리에게 있으며 자신이 먼저 왕위를 계승했을 시 이러한 명분을 뒤엎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둘째는 먼저 자신이 왕위를 계승할 시 “내가 죽은 뒤에는 아들과 사위를 구별하지 말고 나이 많고 어진 사람으로 왕위를 잇게 하라”는 남해가 남긴 유언 때문이다. 탈해가 유리에게 왕위를 양보함으로써 얻는 것은 정치적 덕망이다. 탈해는 유리에게 왕위를 먼저 양보함으로써 어진 사람이 된 것이며 이것은 왕위계승의 명분을 더욱 확고히 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남해도 막강한 힘을 가진 탈해를 제치고 자신의 아들인 유리에게 왕위를 계승시키고 싶었을 것이며 그런 이유로 그러한 내용의 유언을 남겼을 수도 있는 것이다. 세째, 탈해에게는 언젠가는 자신이 왕위를 계승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탈해에게는 가장 중요했다. 그러면 탈해는 어떤 이유로 다음 왕위계승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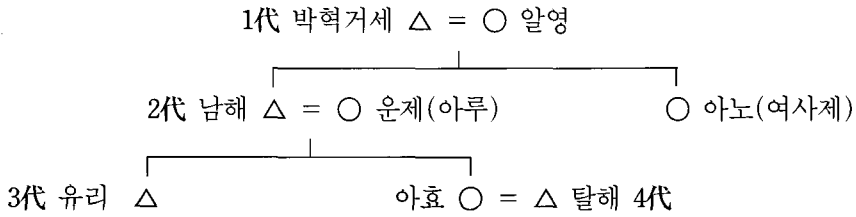


그림 1. 사위 탈해의 왕위계승과정

앞에서 서술했다시피 한국사회는 집의 사회이며 집의 구성원은 부모와 그들로부터 뼈와 육을 같이 물려받은 자녀들이다. 남해의 집 구성원은 남해와 그의 부인인 운제(혹은 아루)와 그들의 자녀인 유리 그리고 아효이다. 유리와 아효는 같은 부모로부터 뼈와 육을 물려받고 있어서 혈연적으로 동등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으로 동등한 상속의 권한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효도 왕위계승권을 가진다. 그러나 딸이 왕위계승의 직접적인 계승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이 왕위를 계승한다.

이점이 신라사회의 부계적 성격을 부인하는 연구자들에게는 자신들 주장의 중요한 논거가 되겠지만 필자에게는 신라시대 적어도 왕위계승에는 부계출계의 논리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딸과 아들이 동등한 상속권한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부계사회를 부정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 되지는 않는다. 첫째 부계사회라고 하더라도 딸을 부계출계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사회에서는 딸에게도 상속이 가능한 것이다. 둘째, 딸에게 직접적인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남편에게 왕위계승이 이루어지는 그 자체도 남권을 위주로 하는 지극히 부계적인 성격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딸의 남편은 딸의 상속 대리인일 뿐이다. 딸의 남편은 딸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자식 즉 상속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외손이 되는 사람에게 그 상속이 일차적으로 계승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재산은 분할될 수 있는 상속형태이나 왕위계승은 분할될 수 없는 상속형태이기 때문에 부계우선의 원칙이 지켜진다. 따라서 상속권자에게 친손이 있으면 친손이 일차적인 상속대상자이며 그 친손이 없을 때 비로소 외손이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딸을 통하여 사위가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권자에게 또 다른 자녀가 있으면 다시 상속권자의 집으로 상속권이 돌아와 또 다른 자녀 간에 윤회되는 것이다. 이처럼 왕위 같은 분할될 수 없는 형태의 상속에 있어 부계가 우선된다는 점에서 신라사회의 부계적 성격을 찾아 볼 수 있다. 신라왕위계승에 있어 탈해가 그의 아들 구추에게 왕위를 계승하지 않고 다시 부인의 친가인 유리의 집으로 가서 유리의 아들인 파사에게 왕위를 계승하는 논리적 근거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한편 부계체통의 왕위계승에 있어 주목되는 또 하나의 사실은 왕위계승자격에 있어 모계가

관여할 개연성에 관한 문제이다<sup>8)</sup>. 일반서민의 경우는 모계의 계통을 기억하기가 불가능 하겠지만 왕실의 경우는 골육의 정통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또 다른 기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까. 필자는 그 실마리로 왕비들의 부인칭호에 주목하고자 한다.

김택규교수는 선도산 신모의 아들인 혁거세의 맏(妹)가 삼국유사 왕력에는 아리영(娥伊英) = 아영(娥英)으로 되어 있고, 같은 혁거세의 부인이면서 선도산 신모의 딸로 이전(異傳)되는 알영(闕英)의 딸이 아노(阿老)이며, 이 아노(阿老)가 남해 왕 3년에 처음으로 지은 시조 묘를 친제(親祭)하는 여사제가 되었다는 기록들 속에는 무엇인가 일련의 맥락이 세워져야겠다고 주장하면서 삼국사기 잡지(雜志) 제사(祭祀)조에 보이는, 제 2대 남해 왕 3년 봄에 처음으로 시조 혁거세 묘(廟)를 세우고 사시(四時)로 제사를 지내는데, 친누이동생인 아노(娥老)로써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다는 기록은, ‘아노(娥老)’ 계열의 왕모·왕비·왕매들이 제정일치시대의 여사제임을 암시해 준다고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김교수는 제 1대 박혁거세의 왕비 알영부인을 비롯하여 제 19대 눌지 이사금까지 아노계 어음(語音)으로 보이는 왕매·왕비·왕녀는 17명이 된다고 밝히면서 20대 자비 왕부터는 아노계 왕비·왕매의 명칭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sup>9)</sup>. 이러한 김 교수의 주장에서 필자는 이것이 신라상대 왕계의 모계 계통이 아닌가하고 짐작한다.

이러할 경우 삼국유사 왕력에 나타나는 기록대로 파사의 어머니가 아효부인(삼국사기에서는 일지 갈문왕의 딸 또는 성이 박씨이고 허루 왕의 딸이라고 밝히고 있다)이라면 파사는 왕비계열의 정통적인 혈통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삼국사기의 기록을 따르더라도 일지 갈문왕이나 허루 왕의 부인이 아노계통이라면 역시 마찬가지이다. 삼국유사 기록에 파사는 애례(愛禮)부인 김씨(삼국사기에서는 허루 갈문왕의 딸 김씨 사성부인이라 기록됨)와 혼인하며 그 사이에서 지마를 출생한다. 김씨는 알지로부터 유래된 것이라면 허루 갈문왕은 김알지의 자손일 것이며, 갈문왕이 아노계열의 여자와 혼인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딸이 왕비가 되었을 때 주어지는 칭호라고 가정한다면(물론 갈문왕의 칭호부여 대상이 이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한정된다고 보지는 않겠다) 허루의 아내는 아노계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마의 어머니 애례부인은 김씨이기는 하나 아노계통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며 지마 역시 아노계통의 혈통을 갖고 있는 셈이다. 지마는 이런 이유로 아버지인 파사의 왕위를 계승받게 되는 것이다.

파사의 왕위계승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우리에게는 파사 이외에 일성이라는 장자가 있었다는 기록 때문이다. 만약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할 수 있다. 즉 일성이 우리의 친자라 하더라도 파사와는 어머니가 다를 수 있다는 가정이다. 그럴 경우 파사의

8) 사실 이 문제는 외손의 왕위계승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라시대 집의 성격 규명과, 차후에 신라왕실의 성씨에 관한 문제제기에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논의를 한다.

9) 김택규, 1985. 『한국농경세시의 연구』(영남대 출판부) 79-80

외가가 일성의 외가보다 왕위계승에 더 정통성을 갖추었을 수가 있다.

지마의 왕위는 삼촌인 일성에게 계승된다. 지마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일성은 유리의 아들이다. 파사에 앞서 왕위계승권을 가졌겠지만 필자의 가설대로라면 그는 파사와 어머니가 다름으로 해서 외가로부터의 정통성을 이어받지 못했기 때문에 왕위계승에서 일단 떨어졌다. 그런데 일성은 부인을 박씨인 지소례 왕의 딸을 부인으로 맞이한다. 지소례 왕이 갈문왕이라면 지소례 왕의 부인은 아노계통의 혈통을 이어받은 여자일 것이며 따라서 유리의 골을 이어받고 아노계통의 혈통을 이어받은 일성의 아들은 왕위계승의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가 아달라이다. 거기다가 일성은 지마의 딸(박씨 내례부인)에게 아달라를 혼인 시킴으로써, 자신의 아들을 아들이 없는 지마의 후계자로 완벽하게 만들어 내었다. 그러나 왕위계승은 아달라에게 바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인 일성이 지마의 왕위를 계승한 것이다.

일성이 지마의 왕위를 계승한 것은 과도기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일성은 아들을 완벽한 왕위계승자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자신의 왕위계승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즉 일성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된 것은 아들이 없는 지마의 입장에서 볼 때 일성의 아들인 아달라가 유일한 후계자였으며 따라서 일성이 왕위에 올랐다하더라도 결국은 아달라에게로 왕위가 계승됨으로써 신라왕실의 부계와 모계의 정통성이 유지될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파사보다 일성의 왕위계승이 뒤늦게 이루어진 데에는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 日知 갈문왕의 존재 때문이다. 기록에 의하면 일지는 유리왕비의 부로, 또는 일성왕비의 부로, 일성왕의 부로 전승이 혼돈되고 있다. 일성왕 비의 부로는 지소례왕이 있지만, 일성의 부가 전승되지 않는 셈이다. 일성왕의 경우 파사왕의 형이면서 유리왕의 장자라는 전승이 있으나 세대간의 연대차이가 현격하기 때문에 이 전승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때 일지는 유리 왕과 일성 왕 양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두 왕 사이의 연대차이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지는 유리왕의 자이면서 일성왕의 부였을 것이다<sup>10)</sup>. 이상은 선석렬의 논지이다. 이 논지에 따르면 일성은 파사의 조카가 되며 파사의 아들 지마가 후사 없이 사망함으로써 일성이 자신의 사촌인 지마의 왕위를 계승한 것이 된다. 이러한 경우 한 가지 문제가 남는다. 파사가 사망한 이후 파사의 형제인 일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조카인 지마가 왕위를 계승했는가 하는 문제이다. 다만 일지가 파사보다 먼저 죽었다면 이 문제는 해결이 쉽게 된다.

일성의 왕위를 계승한 아달라 역시 장인인 지마처럼 후사를 두지 못하고 죽는다. 이제 박씨

10) 신석렬, 2000, 「신라갈문왕의 재검토」 『학국고대사와 고고학, 학산 김정학박사 송수기념논총』 864

계통의 왕가는 혁거세 계통의 정통한 골과 아노계통의 정통한 혈통을 계승한 사람이 없다. 전술하였다시피 친손이 없으면 외손에게로 그 상속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제 중요한 것은 외손의 계통이다. 아달라에게도 외손이 없으며 지마, 파사 계통에도 외손이 없다. 이제 그 대상은 석탈해의 아들 구추의 계통이다. 구추는 남해의 외손이다. 남해에게는 파사라는 친손이 있어 부계우선 논리에 의해서 왕위가 계승되었다. 이제 파사의 계통이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남해의 외손인 구추가 상속의 대상이 된 것이다. 구추의 어머니는 남해의 장녀인 아효로 박혁거세 부인인 알영의 혈통을 이어받았다. 다시 말하면 구추의 혈통은 아노의 계통의 정통성을 잇고 있는 것이다. 이것으로 비로소 왕위계승권은 친손이 없는 박씨 집에서 외손인 석씨의 집으로 완전히 넘어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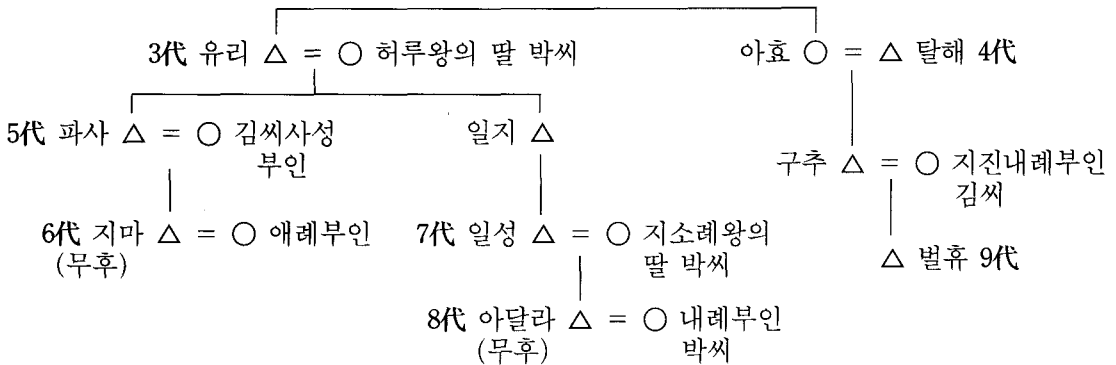


그림 2. 석씨가 외손으로서 왕위를 계승하는 과정

그래서 왕위는 구추의 아들 별휴에게 넘어간다. 구추는 김씨 지진 내례 김씨부인과 혼인을 하며 별휴는 그 두 사람의 자식이다. 구추가 왕위를 계승하지 못한 것은 세대를 고려해 볼 때 왕위계승시기에 이미 사망한 것이 아닌가 싶다. 어찌되었던 간에 별휴의 어머니 지진 내례 김씨는 부계는 알지의 계통으로 추정되지만 그 이름으로 보아 그 모계의 계통은 아노의 계열인 것 같다. 만약 이와 같은 추측이 맞는다면 알지계열은 박씨 아노계열의 여자들을 부인으로 맞아 혈통의 정통성을 잇고 있었던 것 같다.

‘娥老’ 계열의 왕모·왕비·왕매들이 제정일치시대의 여사제임을 암시해 준다는 김택규 교수의 견해를 믿는다면 알지계열은 여사제 계열을 부인으로 맞아들임으로서 이미 왕위계승 경쟁에 도전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이미 알지는 탈해가 “후사를 이을 사람<sup>11)</sup>”으로 거론한바 있다. 그러나 알지가 왕이 되지 못한 것은 탈해도 자신의 왕위계승이 부인을 대신한 것뿐이며 따라

11) 『삼국사기』권 제1 신라본기 제 1

서 왕위 상속권자의 자격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지 계열은 아노계열의 여자와 혼인함으로써 왕위계승권한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외가의 정통성만 계승한다면 왕위계승권을 가진 집에 사위로 들어갈 경우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열리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달라로부터 왕위를 계승한 벌휴는 아노계통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는 셈이며 외손으로서 왕위와 시조 묘에 대한 제사권을 함께 물려받은 것이다. 같은 왕위계승이라고 하더라도 벌휴의 할아버지인 탈해가 왕위를 계승한 것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할 수 있는데, 탈해가 부인을 대리하여 왕위계승을 한 것이라면 벌휴는 아버지인 구추가 외가로부터 상속받은 왕위계승권을 부계적인 상속요소로 다시 상속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부계자손에게 왕위를 상속할 상속권도 같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로써 석씨 집의 골도 왕위계승에 있어 정통성을 확립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벌휴의 왕위는 자신의 부계자손인 내해에게 계승된다. 그런데 내해는 벌휴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이다. 벌휴에게는 장남 골정과 차남 이매가 있었으나 이들은 모두 일찍 사망했다. 장남인 골정은 딸 하나와 조분, 첨해라는 아들들을 두었고 차남인 이매는 내해라는 아들 한명을 두었다. 전술했듯이 한국사회의 집의 개념에 비추어보면 벌휴의 집의 구성원은 벌휴와 벌휴의 부인(벌휴의 부인도 벌휴 어머니처럼 지진 내례부인이다.) 그리고 그들의 아들인 골정과 이매이다. 이들이 왕위계승시기까지 생존했다면 어머니가 같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왕위를 계승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왕자시절에 모두 죽었기 때문에 왕위계승의 순서는 벌휴의 손자녀들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이미 이 손자녀들 대에는 어머니가 다른 두 집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경우 어느 집에 왕위계승권이 주어지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에 두 집 중 한 집이 아노계통의 정통성을 잊지 못했다면 그 집은 왕위계승에서 탈락할 것이다. 그러나 두 집 모두 그 정통성을 잊고 있다고도 볼 수도 있다. 현실은 후자였던 것 같다. 골정의 부인은 구도 갈문왕의 딸 옥모부인 김씨이며 이매의 부인은 내례부인이다. 골정의 부인인 옥모부인은 아노계와 語音이 다른 것 같지만 그의 아버지가 갈문왕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아 아노계의 육을 이어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매의 부인인 내례부인의 어음이 아노계통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면 이 두 집 모두에 왕위계승의 자격이 주어질 것이며 사실 주어졌다. 즉 골정의 딸과 골정의 아들인 조분, 첨해 그리고 이매의 아들 내해 모두가 왕위계승의 대상이다.

이처럼 두 집 모두에 왕위계승자격이 주어지면 왕위계승자가 너무 많아지게 된다. 왕가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족내혼으로 풀어내고 있다. 첫째, 이매의 아들인 내해가 골정의 만딸과 혼인함으로써 왕위계승자를 하나 줄였다. 둘째 골정의 아들 조분이 사촌인 내해의 사위가 됨으로써 차세대의 왕위계승자를 또 하나 줄였다. 셋째 내해는 자신의 아들 우로를 자신의 사촌이면서 사위인 조분의 사위로 만들면서 자신의 핏줄의 왕위 계승의 확률을 높였을 뿐만 아

나라 차세대 왕위 계승자의 숫자를 또 하나 줄이고 있다. 그리고 내해는 사촌 누이인 골정의 딸과 혼인함으로써 결정적인 두 가지 이득을 얻었다. 그 하나는 골정의 맏딸과 혼인함으로써 그녀의 동생인 조분과 침해를 제치고 왕위계승의 1순위가 된다는 점이다. 둘째는 골정의 맏딸과 혼인함으로써 아노계통의 정통성을 자식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골정과 이매 두 집 모두가 왕위계승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그들의 부인이 모두 아노계통이기 때문이라고 가정한다면 말이다.

그래서 내해는 별휴의 차남의 자식이면서도 큰집 사촌인 조분과 침해를 제치고 먼저 왕위에 올랐다. 내해의 왕위는 계속하여 사촌형제이면서 자신의 사위인 조분에게로 계승된다. 사실 조분의 왕위계승은 내해의 사위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독자적으로 가지는 왕위계승 권한에 의해서이다. 조분의 왕위는 자신의 친동생인 침해에게 다시 넘어가게 된다. 침해 역시 골정의 아들로써 왕위계승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별휴의 손자 대는 모두 한번씩 왕위를 계승한 셈이다.

침해의 왕위는 미추에게 계승되었다. 그런데 미추는 석씨 집의 사람이 아니다. 미추는 조분 왕의 딸인 광명부인과 혼인을 한 사람이다. 후사 없이 사망한 침해의 왕위를 이을 사람은 미추 외에도 조분의 사위일 뿐만 아니라 내해의 아들이며 조분의 맏누이의 아들인 우로와 조분의 아들 유례, 결속이 있다. 그러나 우로는 일찍 사망을 하게 되면서 왕위계승을 할 수 없었다. 우로가 만약 왕위계승을 했다면 그 첫 번째 조건은 내해의 아들이거나 조분의 생질이어서가 아니라 조분의 사위라는 점 때문이었을 것이다. 미추가 조분의 아들인 유례나 결속보다 먼저 왕위에 오른 것은 미추의 부인인 광명부인이 이들보다 연장자였기 때문이다.

미추는 알지계열의 자손이며 어머니는 박씨로 갈문왕 이철의 딸이다. 알지 계열이 처음으로 왕이 된 것이다. 미추의 어머니가 갈문왕의 딸임을 미루어 볼 때 그리고 박씨임을 미루어 볼 때 미추의 어머니 역시 아노계통의 사람이 아닌 가 쉽다. 전술했다시피 알지계열이 아노계통의 여자들과 혼인하면서 육의 정통성을 유지하다가 비로소 미추에 와서 석씨 집에 사위가 되면서 왕위계승을 이루어 낸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미추가 왕이 되었다고 해서 아직 알지계로 왕위를 계승시킬 수 있는 권한이 넘어간 것은 아니다. 미추는 아직 자신의 부인인 광명부인을 대신할 뿐이다. 그래서 다음 왕위계승은 조분왕의 맏아들인 유례에게로 넘어간다. 그리고 유례의 왕위는 순서에 따라 그의 동생인 결속에게 넘어가야 한다. 그런데 결속은 왕위계승시기까지 살아 있지 못했던 것 같다. 그래서 다음 왕위는 결속의 아들 기림에게로 넘어 간다. 내해의 손자이면서 우로의 아들인 흘해가 있지만 부계계통으로 볼 때 기림이 큰집이기 때문에 기림이 먼저 왕위를 계승한 것이다. 자연히 기림의 왕위는 흘해에게 계승되었다. 기림이 후사없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흘해가 내해의 손자이긴 하나 조분으로 봤을 때는 외손이 된다. 당시 이미 왕위계승권이 골정계로 넘어와 있었다고 보

면 흘해가 왕위계승을 하게 된 것은 내해의 손자라서 보다는 골정계의 외손이기 때문이다. 흘해 역시 기림과 같이 후사 없이 사망했는데 이로써 사실상 석씨 집은 왕위계승자가 없어지게 되었다.

부계출계에서 상속받을 사람들이 없을 경우 다음 상속의 대상은 당연히 외손이다. 석씨 집에서 볼 때 남아 있는 가장 가까운 외손은 조분의 딸 광명부인의 자녀들 즉 미추의 자녀들이다. 그런데 미추는 딸만 두명을 두고 있다. 보반과 아류이다. 보반은 사촌인 내물과 혼인을 했으며 아류도 알지의 후손인 실성과 혼인을 한다. 자연스럽게 만딸 보반의 남편인 내물이 왕위에 올랐다. 그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아류의 남편인 실성이 왕위를 계승하게 된다. 실성은 알지계인 이찬대서지의 아들이며 그의 어머니는 이리부인으로 아간 석등보의 딸이다. 이 왕위계승과정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목격하게 된다. 미추가 알지계열이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딸들이 알지계열의 사람과 혼인하지 않았다면 왕위계승은 결코 알지계열로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미추에게 아들이 있어서 그가 왕위를 계승했다면 당연히 외가의 왕위계승권을 상속받아 자신의 부계출계인 알지계열 쪽으로 왕위계승권이 넘어갔을 것이다. 그러나 외손녀는 다른 출계에 왕위 계승권을 넘기는 매개역할 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이점이 신라 왕실이 부계 출계를 따르고 있다는 증거이다. 물론 내물과 실성도 왕위를 자기 자손에게 계승시킬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부인의 대리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내물이나 실성의 자식대에 가서야 비로소 왕위를 계승시킬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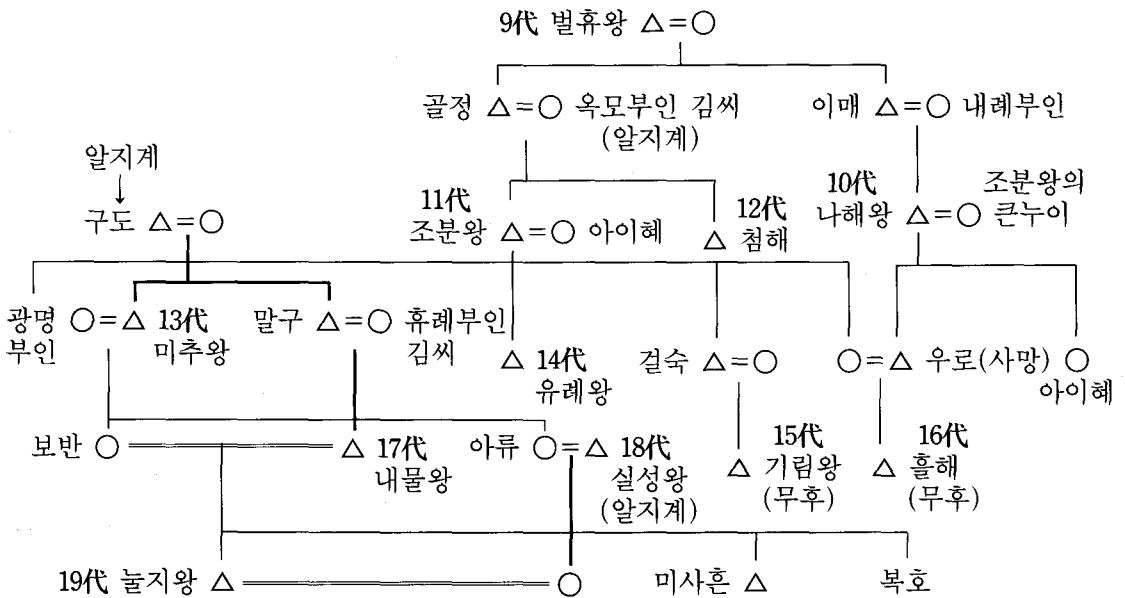


그림 3. 알지계가 외손으로서 왕위를 계승하는 과정



미추의 큰 딸인 보반이 자신의 사촌인 내물과 혼인한 것도 알지계열의 정략이었을 것이다. 즉 보반의 아들(눌지)은 부계 쪽으로는 알지계열이지만 어머니 보반을 통하여 보반의 외가이며 자신의 외외가가 되는 석씨 집을 계승할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실성은 동서인 내물과는 형편이 달랐다. 실성은 자신의 부인인 아류를 통하여 왕위를 계승하지만 아들을 두지 못하고 딸만 한 명을 두었다. 가만히 두면 실성의 왕위는 다시 내물의 세 아들 눌지와 미사흔, 복호 그리고 실성의 사위에게로 계승된다. 그 중에서 실성의 사위자리는 알지계에서 볼 때 왕위계승에 다른 집이 관여할 개연성을 부여한다. 그래서 알지 계는 내물의 맏아들인 눌지를 실성의 사위로 들여보냄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한다.

여기서 우리는 동서간이면서 사돈간인 내물과 실성사이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암투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내물이 실성에게 먼저 싸움을 걸고 있다. 내물 37년에 내물은 자신의 동서이면서 다음 왕위계승권자인 실성을 고구려에 불모로 보낸 것이다. 내물은 자신의 아들인 눌지를 딸만 가진 실성의 사위로 들여보내 실성의 왕위계승 후보자로 이미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성을 제거하려고 했을까? 내물에 입장에서서는 실성을 제거하면 왕위는 자신의 아들이면서 실성의 사위인 눌지에게 바로 전달될 수 있었으며 이것은 왕위계승 시기를 단축시켜 줌으로써 자신의 자식들에게 한명이라도 더 왕위를 계승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성은 고구려에서 돌아와 왕위를 계승했다. 실성은 왕위에 오르자 바로 내물 계에 반격을 가했는데 왕위 즉위 원년에 내물의 아들 미사흔을 왜에 불모로 보낸 것과 즉위 11년에 다시 내물의 아들 복호를 고구려에 불모로 보낸 것이 그것이다. 실성 역시 이러한 반격에는 왕위 계승자 숫자를 줄여 자신의 외손자에게 바로 왕권을 계승시키고자하는 계산이 깔렸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실성은 자신의 사위인 눌지까지 제거함으로써 이 시기를 앞당기려 한 것이고 이 사실을 안 눌지는 급기야 실성을 제거하고 왕위를 찬탈하게 되었던 것이다.

알지계의 김씨 집이 신라왕위 계승권을 안정적으로 획득하게 된 것은 바로 눌지 대에 이르러서였다. 눌지의 아버지 내물은 왕위를 계승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부인인 보반 부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눌지는 어머니 보반 부인을 통하여 자신의 외외가로부터 왕위계승권을 상속 받은 사람이며, 따라서 자신의 부계자손에게 왕위를 상속할 권한을 가지게 된 사람이다. 자신의 아버지 내물과 장인인 실성 그리고 끝내는 자신까지 연루된 그러한 정치적 암투과정을 거쳤던 눌지는 자신의 아들 자비와 미사흔의 아들 습보를 각각 사촌 혼을 시킴으로써 왕위계승권의 자격을 자기의 집 구성원으로 한정시키고 있다. 그 결과 눌지의 왕위는 자신의 아들인 자비에게로 자비의 왕위는 다시 자신의 아들인 소지로 계승되었다. 그리고 소지는 즉위 9년에 나을에 신궁을 설치한다. 미사흔이 형인 눌지보다 먼저 사망함으로써 왕위계승을 못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눌지의 장자계열로 왕위가 계승되었다.

소지는 미천한 신분의 아내로부터 자식을 얻었으나 신분상 왕위계승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소

지의 왕위는 미사흔의 손자요 습보의 아들인 지증에게 계승이 된다. 그리고 지증의 왕위는 다시 자신의 아들인 법흥에게 계승되며 자식이 없는 법흥은 진흥에게 왕위를 계승하는데 진흥은 법흥의 동생이면서 사위가 되는 입종의 아들이다. 진흥은 다시 자신의 아들인 동륜을 자신의 여동생과 결혼시킨다.

여기서 우리는 습보의 아들인 지증과 입종의 아들인 진흥의 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증은 놀지의 외손이다. 아버지인 습보가 사촌 혼을 했기 때문이다. 진흥은 법흥의 외손이다. 진흥의 아버지인 입종이 자신의 형인 법흥의 딸이면서 자신의 질녀인 사람과 혼인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놀지의 직계자손이 없어서 외손인 지증이 왕위를 계승했고 법흥의 자식이 없어서 외손인 진흥이 왕위를 계승했다는 논리도 성립이 된다. 자비와 습보가 사촌 혼을 하고, 입종이 자신의 질녀를 취함으로써 그리고 동륜이 고모를 취한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증 이후로도 장남계열의 부계자손과 외손에게로 왕위계승이 이루어졌다. 여기서 외손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은 놀지의 부계자손이다. 그렇다면 놀지의 자손들은 사촌 혼 그리고 질녀와 아니면 고모와의 혼인을 통해 왕위 계승권자를 최소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외손에게 왕위를 계승시키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놀지 계열의 부계자손들에게 왕위계승권을 한정시켜 나가고 있었던 것이 되는 것이다.

진흥은 두 아들을 두는데 큰 아들이 동륜태자이고 둘째 아들이 금륜(혹은 사륜)이다. 태자인 동륜이 일찍 사망하면서 둘째 아들인 금륜이 왕위에 오르니 진지 왕이다. 진지 왕은 왕위에 오른 지 4년 만에 폐위를 당하게 되는데 삼국유사의 도화녀 비형랑 조의 기록을 볼 때도 진지 왕의 폐위사실이 폭정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진지에게도 용수·용춘이 있었으나 왕위 계승권에서 떨어진 것은 아버지인 진지가 폐위를 당한 것과 유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지가 폐위당하고 왕위계승은 동륜의 아들인 진평에게 이어진다. 진평의 어머니는 지증 왕의 둘째 아들이면서 진흥의 아버지인 입종의 딸로서 진흥의 누이가 되는 만호부인이다. 진평에게 아들이 없어 딸인 덕만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니 선덕여왕이 된다. 지금까지의 왕위계승률을 따르자면 덕만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덕만의 남편이 부인 대신 왕위를 계승하여야 맞다. 그렇다면 덕만의 남편은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라야만 한다. 놀지 이후로 왕위계승이 김씨에게 한정되어 이루어지면서 사촌 혼이나 질녀를 아내로 삼는 사례는 놀지 계통에서 왕위계승의 정통성을 찾고자 함이었다. 이러하다면 선덕의 남편감은 진지의 아들인 용수·용춘 밖에는 없다. 그러나 용수·용춘은 이미 아버지인 진지가 폐위 당함으로써 해서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고 덕만은 왕위를 계승할 수 없는 사람을 남편으로 맞아 들였으며 이런 이유 때문에 남편이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고 딸인 덕만이 왕위를 계승하게 된 것이다. 선덕의 뒤를 이어 즉위하는 진덕 여왕의 경우도 같은 이유에 해당한다.

## IV. 결론

신라사회가 여성도 자신이 태어난 본가의 성원권을 가지는 “강력한” 부계출계사회라고 본다면 탈해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은 유리가 아니라 남해로부터이며 그것은 부인을 대신하는 것이다. 부계사회에서 여자도 성원권을 가지지만 남권위주사회에서는 그 역할을 남편이 대신하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탈해 자신의 성원권이었다면 그 왕위는 자신의 아들에게 넘어갔을 것이다. 그러나 부계원리에 따라 왕위는 유리의 아들인 파사에게로 넘어 갔다. 이것이 왕위가 아니고 분할될 수 있는 재산이었다면 친손과 외손이 나누어 가졌겠지만 왕위는 분할될 수 있는 상속대상이 아니다. 분할될 수 없는 상속대상이기 때문에 부계의 우선원리가 지켜진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신라가 부계사회였다는 증거이다. 이러한 상속의 부계우선원리는 신라 상대 왕위계승에 있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파사에게 넘어간 왕위는 파사의 아들인 지마에게 계승되었다가 다시 유리계인 일성에게로, 그것은 다시 일성의 아들인 아달라로 넘어간다. 아달라가 무후가 되자 왕위는 탈해의 손자인 별휴에게 넘어간다. 만약 별휴의 아버지인 구추가 당시에 생존했다면 당연히 구추가 왕위를 계승하였을 것이다. 만약 정치적 역학관계에 의하여 왕위가 석씨로 넘어갔다면 그것은 별휴가 아니라 탈해 때가 되어야 논리가 맞다. 여기서 정치적 역학관계가 완전히 배제되었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다. 다만 조선중기 이전 외손봉사의 관행처럼 배분될 수 없는 상속형태는 친손이 없을 때 외손도 당연히 윤회적 순서에 따라 상속권을 가지는 한국 부계사회의 특징적 논리가 있었고 그 논리가 정치적 역학관계보다 우선적이었다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석씨들이 왕위계승을 독점하게 된 이후도 이러한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약간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 사위로서 왕위계승을 한사람은 내해(나해), 미추, 내물, 실성인데 이중 내해는 사촌인 조분의 큰 누이와 혼인을 함으로써 조분보다 먼저 왕위계승을 이룬다. 여기서 석씨들도 근친혼을 함으로서 왕위를 석씨 씨족 내에서 독점하고자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세대에 와서 미추, 실성의 왕위계승에서 일어난다. 이들은 모두가 알지계의 김씨들이다. 이들은 석씨 집으로 결혼하여 왕위를 계승한 사례들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바로 정치적 역학관계이다. 즉 알지 계들이 혼인을 통하여 왕위계승에 접근하고 있으며 석씨들이 이를 근친혼으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알지계인 미추는 자신의 조카인 내물을 자신의 딸과 혼인시키며 또한 알지계의 실성을 자신의 또 다른 딸과 혼인하게 함으로써 김씨들이 왕위계승에 더욱 접근하도록 만들고 있다. 미추의 사위이자 조카인 내물 역시 자신의 아들인 놀지를 알지계인 실성의 딸과 혼인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흘해 왕이 무후가 되어 이미 왕위계승권이 김씨들에게 넘어온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김씨간의 근친혼이다. 이것은 내물이 자신의 아들인 놀지를 실성의 딸(모변 교차 사촌혼)과 혼인시킴으로

씨 실성의 딸이 다른 사람과 혼인할 때 생기는 왕위계승의 또 하나의 경쟁자의 발생을 막기 위한 근친혼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리하여 왕위계승권은 석씨의 외손이 되는 눌지대에 와서 완전히 김씨 그것도 눌지계로 넘어간다.

이리하여 “분할될 수 없는 상속형태(제사나 왕위상속)는 친손이 없을 때 외손에게로 상속권이 넘어 간다”는 단순한 상속논리에 따라 왕위는 박씨에서 석씨로 다시 석씨에서 김씨에게로 넘어간 것이다. 설사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왕력이 조작되었다 손치더라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편찬한 고려시대의 출계원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출계원리에서 차지하는 외가와 외손에 대한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김씨가 왕위계승을 독점하고 난 후 일어나는 근친혼은 바로 김씨들이 그것도 눌지 왕계의 자신들 집단 내에서 왕위계승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었음이 틀림없다. 이것은 외부에서 왕위계승에 도전자를 사전에 막고 그리하여 외손에게 왕위계승권을 넘겨주는 일은 막았지만 결국 눌지 계 내에서 성골이 쇠잔하여 마지막에는 여왕들을 등극시켰고 그것은 다시 진골에게 왕위를 넘기지 않을 수 없는 결과를 만든 것이기도 하다.

신라 상대왕위계승과정을 살펴보면 주목되는 것은 한국사회의 집에 대한 개념이다. 한국사회에서 집은 같은 부모를 가진 형제자매가 단위가 된다. 어머니가 다르면 외가가 달라지는 것이고 외가가 다르면 상속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탈해에게 별휴 외의 또 다른 손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손자는 별휴와는 다른 외가를 가지게 되며 그 외가는 왕위계승에 있어 별휴와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개연성을 만든다. 소지가 미천한 배우자로부터 아들을 얻었으나 그 아들이 왕위계승에서 탈락되는 것은 그 아들의 외가의 문제 때문이다. 똑같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모의 신분이 다르면 왕위계승에서 멀어지게 된다. 신라 상대 왕들에게는 왕위계승권을 가진 자식 외에도 많은 자식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외가가 다르기 때문에 일찌감치 왕위계승에서 멀어져 나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사위로서 왕이 된 경우 다른 부인으로부터 많은 자식을 생산했다하더라도 외가가 왕실이 아닌 자손은 역시 왕위계승권 밖으로 밀려 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 위에서 이 논문은 또 하나의 단초를 제공한다. 그것은 왕위계승자의 자격을 규정하는데 외가의 역할이 크다면 성골을 결정짓는데 가장 큰 변수가 바로 외가의 혈연적 계통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점은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과제로 남게 되었다.

<참고문헌>

- 정구복 외 역, 1997. 『역주 삼국사기』 (서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 이민수 역, 1984. 『삼국유사』 (서울 : 을유문화사)
- 김철준, 1962. 「신라귀족세력의 기반」 『인문과학』7
1968. 「신라시대의 친족집단」 『한국사연구』
- 김택규, 1985. 『한국농경세시의 연구』 (경북 : 영남대 출판부)
- 선석열, 2000. 「신라갈문왕의 재검토」 『학산 김정학 박사 송수기념논총』
- 이광규, 1977a. 『한국가족의 구조분석』 (서울 : 일조각)
- 1977b. 『한국가족의 사적 연구』 (서울 : 일지사)
- 이기동, 1980. 『신라골품사회와 화랑도』 (서울 일조각)
- 이종욱, 1980. 『신라시대 왕위계승 연구』 (경북 : 영남대 출판부)
1983. 「신라 중고시대의 골품제」 『역사학보』 99·100합집
1999. 『신라골품제 연구』 (서울 : 일조각)
- 최재석, 1996. 『한국가족제도사 연구』 (서울 : 일조각)

## **An anthropological study on the succession to the throne among descendents in the daughter's line during early ancient Shilla period**

Sung, Tae-kyu

Scholars have been discussed about Korean Family History till now, however it is very doubtful that the maternal mother's family was disregarded. Perhaps, the stem of Korean family is a patrilineal society so that the maternal mother's family was disregarded. The writer insists that basically Korean society is patrilineal society. As a consequence, due to the existence of the maternal mother's family, Korean society has been maintained the patrilineal society. Among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al changes, a patrilineal society had been adapted realistically one of the mechanisms of understanding the existence of the maternal mother's family. Also this is the main idea of this article.

If we consider that Shilla society is the "powerful" patrilineal society, as a result, the succession to the throne to son-in-law including Talhae is no wonder. But, a succession to the throne to son-in-law is in place of wife, so a husband merely took the place of wife's throne in the male dominated society. Therefore, the husband who took over the wife's throne to the throne can not be given the crown to his own child. And yet, descendents in daughter's line can take over the crown who doesn't have his own child. Through this theory, the succession to the throne was handed down from Park family to Seok Family and again to Kim Family. That is to say that "No son, the crown will be given to grandchild-in-law." According to the simple genealogical succession theory, the throne is handed down from Park family, to Seok family and again from Seok family to Kim family. This article analyzes the succession to the throne according to the theory as stated above. Even if the historical facts were cooked up in Samguksagi and Samgukyusa, we still understand the rule of descent in Koryo period. The matters of the maternal mother's family and descendents hold an important position in the Korean rules of descent.

[key word] mother' maiden family, grandchild of daughter, descent, succession to the throne